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51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김명진 의원, 서영훈 의원, 최연숙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윤명수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전영옥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2023. 9. 14.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6조에서는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개편되었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과 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정책 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다. (안 제4조) 의장과 의원의 책무를 규정함

라. (안 제5조~제6조)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교육 연수계획의 통지에 대해 규정함

마. (안 제7조)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바. (안 제8조) 교육연수 참여 후 증빙서류 제출과 정산에 대해 규정함

사. (안 제9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연수에 대한 계획,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 예산조치 :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시설 등 외부 기관에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의원”이란 당진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당진시의회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연수 관련 연간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운영계획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 결과
4.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
5.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
6. 그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
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
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
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제6조(교육 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연수 계획을 의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①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①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은 교육연수 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

③ 의원 당선인에게 소요되는 교육비 및 자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년 월 일

당진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① 지역구시 · 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 · 公告 · 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 · 公告 · 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 · 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 · 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 1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2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박명우 의원, 김봉균 의원, 한상화 의원

1. 개정이유

❍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조)

- (현행) 총무위원회 → (개정) 행정문화위원회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3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한상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진 의원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은 단순한 선행 차원이 아닌,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계가 원활한 사회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이 시행하는 보호선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거주 환경 개선 지원
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한상화 의원**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은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함으로,
-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통하여 지역사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이 시행하는 보호선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보호관찰 대상자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안 제6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다만, 집행 과정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법률용어에 맞는 형식으로 일부 문구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복 단어 '의' 삭제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생략)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생략)	- 집행 과정에서 오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삽입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 기관 나열에 따른 부호 통일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붙임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2)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보호선도 사업)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 제5조(예산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및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모두 포함해도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장 조강희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2			
정 책 명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조강희	전화번호	041-5284-72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한상화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거주 환경 개선 지원

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표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4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박명우 의원, 김명진 의원, 전선아 의원

1. 폐지9이유

❍ 이 조례는 당진시 관내의 실내외 운동기구,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운용되어 왔으나, 현재 관내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이 조례를 운용할 사유가 없음

❍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박명우 의원**

❍ 제안이유: 현재 관내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조례운용의 필요성이 없음

❍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Ⅱ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체육진흥과) 종합의견: 폐지 타당**

- 본 폐지조례안은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 운용의 실익이 없어 폐지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폐지 적법**

- 본 폐지조례안의 당초 제정 목적은 관내 실내외 운동기구,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함이나 다른 조례 운용을 통해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에 대한 법적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의원발의 조례안(박명우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전선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5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전선아 의원, 최연숙 의원, 조상연 의원, 심의수 의원, 한상화 의원

1. 제정이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양관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안 제5조)
라. 자원발굴·협력 추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붙임1]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1)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붙임3]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사업
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원발굴·협력 추진)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1			
정 책 명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신가희	전화번호	041-360-60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아니요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 발의의원: **전선아 의원**

❍ 제안이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지역 사회 기반의 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자원발굴·협력 추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영양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생애 주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적용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다만, 중복 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조항 간 상호 충돌 및 중복된 사항에 대해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제4호 및 제5호는 상위법과 예산편성 절차에 기 규정되어 관리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실익이 낮음 - 제4조 제7호는 제5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판단됨 - 또한, 제4조는 강행규정이고 제5조는 임의규정으로 논리적 충돌 소지가 있어 삭제가 바람직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양·식생활 교육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영양·식생활 교육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7.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 위치 수정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붙임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1)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56호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 전영옥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김명회 의원

1. 개정이유

❍ 법령상 정당한 절차로서의 상품권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상품권 행사 추진 근거 및 참여자의 신뢰성 확보

❍ 또한, 농・축・수 산물 및 특산품 등의 소비 촉진과 홍보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

2. 주요내용

❍ 농・축・수산물 등 관련 상품권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합　　의 :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93)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④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구매액 일부를 구매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93			
정 책 명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이현주	전화번호	041-350-401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모르겠음 / 1-3 : 모르겠음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전영옥 의원**

❍ 제안이유

- 법령상 정당한 절차로서의 상품권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상품권 행사 추진 근거 및 참여자의 신뢰성을 확보
- 또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소비 촉진과 홍보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추진

❍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Ⅱ 주요내용

❍ 농·축·수산물 등 관련 상품권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지역경제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상품권 행사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정당

한 절차로서의 상품권 지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한 상품권 행사 추진 근거 마련으로 참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등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대상 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품권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대상 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구매액 일부를 구매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시장이 지정하는” 추가로 대상 명확화 - 부호 및 문구 자연스럽게 수정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57호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 전영옥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김명회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조례는 수산물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행사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대상·범위·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당진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를 통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예산조치 : 5년간 1,690,000천원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7)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다양한”을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시장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품 수산물의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나. ---------- ----------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시장은 수산물 유통 ·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명품 수산물의 육성 ·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 시식 ·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은 2025년을 기준으로 5개년 산정

-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시식·할인 등 추진사업비 계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세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90,000	-	-	-	-	190,000
	소계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세입	의존재원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자체수입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소계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총 비용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 2025년 추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490,000	95,000	150,000	245,000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300,000	-	150,000	150,000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90,000	95,000	-	9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95,000	-	-	-	-	95,000
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시비 일반회계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95,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의존재원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자체수입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세 출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90,000	-	-	-	-	190,000
재원 조달		4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690,000
의존재원	소 계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보조금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자체수입	소 계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지방세	24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45,000

4. 작성자 : 경제국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7			
정 책 명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항만수산과		
	담당자명	이지현	전화번호	041-350-42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항만수산과)	*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항만수산과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 의견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전영옥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물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행사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대상·범위·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수산물 마케팅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당진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소관부서: **항만수산과**

Ⅱ 주요내용

❍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항만수산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 수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물론 우수한 당진시 수산물의 경쟁력 형성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유사 단어의 중복적 사용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유사 단어의 중복적 사용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지원대상 사업)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	제5조(지원대상 사업)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	- 축제도 행사에 포함되므로 “행사 등”으로 표현 - “홍보·시식·할인 등”으로 앞에 표현되어 있게 “다양한” 삭제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58호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 최연숙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2022년 기준,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60,908천톤으로 이 중 축산분야 배출량은 225.2천톤으로 추정됨.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가축 사육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 대폭 감축하거나 전체 배출량 감축이 어렵고, 특히 축산물 소비 증가세에 따라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773만 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축산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발맞춰 당진시의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당진시는 지난 2020년,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마.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소비촉진(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축산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6)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산업

2. “인증 농장”이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인증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을 말한다.

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축산농장

다.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

마. 축사 관리, 가축분뇨 처리, 사육밀도 준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

3.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2. 친환경・저탄소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 방안

4.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저탄소 축산 기술・자재개발 및 보급・지도

2. 친환경・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

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

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6.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저탄소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

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 친환경·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저탄소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6			
정 책 명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축산과		
	담당자명	김민성	전화번호	041-350-42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축산과)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축산과장 귀하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 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 저탄소 축산 기술 · 자재개발 및 보급 · 지도
  2. 친환경 · 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
  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
  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6. 친환경 · 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훈련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제5조(지원사업 등)는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따른 발의 조례안의 예상 소요 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농업환경국 축산과장 고석범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 발의의원: **최연숙 의원**

❍ 제안이유

-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 대포 감축이 어려워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당진시는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축산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안 제5조 ~ 제6조)

❍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소비촉진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축산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저탄소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일부 문구 띄어쓰기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 띄어쓰기 수정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 **[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6)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4. "인증농업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생산자집단"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8. "인증기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인증기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
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
11.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9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심의수 의원, 김명회 의원, 전선아 의원

1. 개정이유

❍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통합권고에 따라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되는 내용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제4조)

나.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제5장으로 규정함(안 제20조 ~ 제24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안 제20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1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안 제22조)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안 23조)
-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4조)

다.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6장인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5조 ~ 제27조)

라.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를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범죄예방디자인 진흥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제5장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23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7조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항(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 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당진시의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법 제6조----------.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 별표----------. ② ---------- --- 별표----------.
<신 설>	제5장 범죄예방 디자인 진흥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

		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23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7조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

	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홍보)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포상)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심의수 의원**

❍ 제안이유: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통합권고에 따라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Ⅱ 주요내용

❍ 통합되는 내용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정비함 (안 제1조 ~ 제4조)

❍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제5장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 제24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20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21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안 제22조)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안 제23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스마트도시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시키는 내용으로,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므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관·정비함으로써,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적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5) **[붙임1]**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5			
정 책 명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명	김종관	전화번호	041-350-107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도시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스마트도시과장 귀하

붙임2 **의원발의 조례안(심의수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를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범죄예방디자인 진흥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

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23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7조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항(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

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당진시의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60호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 김봉균 의원, 최연숙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당진시에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미비한 수준으로 보다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사업 시행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고자 함.

❍ 이와 함께 현행「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2제1항에는 치매 등의 정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함.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매를 진단받으면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함.

❍ 하지만,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실제 치매 환자의 30% 가량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나 실제 운전자의 치매 진단 이후 절차나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경찰청,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교통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령운전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 예산조치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73)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7조와 제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제8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신 설> <신 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7조와 제8조----------.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신 설>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73			
정 책 명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장효진	전화번호	041-350-45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7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교통과장 귀하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8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8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장창순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봉균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보다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사업 시행과 재정지원 및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육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소관부서: **교통과**

Ⅱ 주요내용

-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추진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고령운전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교통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사업 지원 및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함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형식 및 문구 등이 법적 어긋남이 없음
- 다만, 확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장치를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나친 확대 해석에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비상자동 제동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비상자동 제동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따른 포괄적 지원 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부담과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붙임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73)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4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정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61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7일

발 의 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전선아 의원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함

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4조~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안 제9조~제10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11조~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종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대해 규정함

바. (안 제14조~제1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이용 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함

사. (안 제18조~제2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 요금, 운행 지역에 대해 규정함

아. (안 제22조~제2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자. (안 제24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

차. (안 제25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규정함

카. (안 제26조~제2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타. (안 제28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연평균 소요 예산 5천만 원 미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8)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9. . ~ 2025. 9. .) 결과 :

○ 관련 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당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도로 · 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9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 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

1. 중증 보행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 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 대상자 등록 · 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시에 이용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대상자로 등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3.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임산부로 정의된 기간

제17조(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12조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전체 차량의 상시 운행이 곤란한 경우 보유 차량 중 일부만을 지정하여 상시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 · 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점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 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2조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 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 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결정할 때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당진시를 우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경기도 평택시
3. 대전광역시
4. 서울특별시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

②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 · 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운행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5장 이동지원센터 등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의6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 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 운영 및 관리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 연계 지원
8. 출발지 · 도착지 · 이용 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9.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한다.

⑥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 교육

3.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에 따른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다.

⑦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 · 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0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신 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0명 이상 20명 ---------- ---------- 특정 성별- ----------

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 ------- 교통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교통 또는 교통연관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1. 장애인·노인·여성·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신 설>	2. 도로·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5. 관계 분야----------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2년----------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제6조 (생 략)	제6조·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신 설>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이 정하는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 고려하여 ---------- 제5조제1항에 따른 ---------- 운행 대수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7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제3항----------.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 제11조---------- 경우 ----------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
제10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이용대상자)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고 ·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 또는 보장구를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 보장구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진단서 ----------.
제11조(이용대상자 등록 · 심사) ① 제	제15조(이용대상자 등록 · 심사) ① 제

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신청인이 ---------- 자료 제출 요청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에 이용대상자로 -------- 다른 ---------- 때는 ---------- 있으며,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신 설>	제16조(이용 기간) 제15조제4항---------- 1. 제14조제1호---------- 2. 제14조제2호 및 제3호---------- 결정 통보서 3.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임산부로 정의된 기간
제13조(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이용 기간 연장) ① ---------- 제16조---------- ② ---------- 제15조 및 제16조----------. ---- 경우 ---------- 제16조에 따라 ----------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전체 차량의 상시 운행이 곤란한 경우 보유 차량 중 일부만을 지정하여 상시 운행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12조제1호----------. ---------- ---------- ----------.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8조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목적,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제12조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목적, 이용 시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2조제2호---------- 제13조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점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
제16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제20조(이용요금) ① ---------- 이용 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 나. (생 략)	1. 제12조제2호---------- 시내버스 요금 -- 2. 제12조제1호---------- 제13조제1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이용 요금을 결정할 때는 ----------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7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당진시를 우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	제21조(운행 지역) ① ----------. ---------- 고려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
②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 · 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 운행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 고려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운행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 ---------- 하며, 운행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신 설>	제5장 이동지원센터 등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16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삭 제>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삭 제>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삭 제>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삭 제>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삭 제>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삭 제>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삭 제>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시행령 제14조의6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8. 출발지·도착지·이용 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9.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④ ----------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삭 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삭 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삭 제>
4. 비영리 민간단체	<삭 제>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 위탁관리 ---------- 한다)에 ----------.
<신 설>	⑥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제6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위탁관리 운영 ------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지시 사항----------.
<신 설>	제24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교

	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다. ⑧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삭 제>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5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 ② ----------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관계 전문가----------.
제24조 · 제25조 (생 략)	제27조 · 제28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첨부 관련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명진 의원**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며,
- 용어의 정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소관부서: **교통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종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이용 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 ~ 제17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요금, 운행 지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8조 ~ 제21조)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22조 ~ 제2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 (안 제24조)

❍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규정함 (안 제25조)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26조 ~ 제27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교통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중점을 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고에 대해 의무화하는 조문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됨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 연평균 소요예산 5천만원 미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8)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9조):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포함)

나. 실태조사 (안 제27조):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차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22~2026)」에 실태조사 계획 기 포함

○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 예상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장창순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8			
정 책 명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정윤희	전화번호	041-350-45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모르겠음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교통과장 귀하